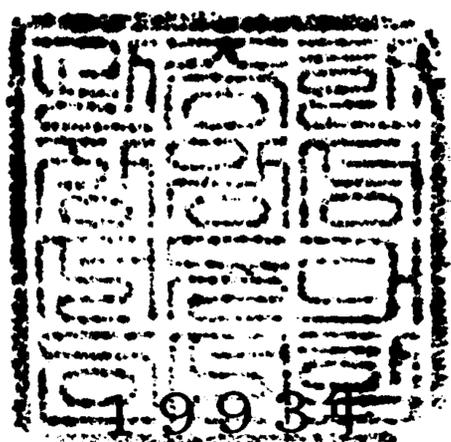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教師, 學父母 및 兒童의 體罰觀에 대한
比較 研究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永 煥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点 煥

教師, 學父母 및 兒童의 體罰觀에 대한
比較 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ew-point of Physical Punishment
Among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1993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永 煥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点煥

教師, 學父母 및 兒童의 體罰觀에 대한
比較 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ew-point of Physical Punishment
Among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永 煥

金永煥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6月 日

審查委員長 ①

審查委員 ①

審查委員 ①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의 方法 및 內容	2
II. 理論的 背景	4
1. 體罰의 意味	4
2. 體罰觀	6
1) 肯定的인 側面	6
2) 否定的인 側面	9
3. 體罰에 관한 各國의 動向	13
1) 美 國	13
2) 日 本	14
3) 英 國	15
4) 프랑스	16
5) 西 獨	17
III. 結果分析 및 解釋	19
1. 體罰에 대한 긍정과 부정	19
2. 敎師·學父母 및 兒童의 체벌에 대한 태도	23

3. 教師 經歷差에 따른 體罰의 見解와 方法의 차이	37
IV. 要約 및 結論	42
1. 要約	42
2. 結論	43
參考文獻	45
附錄	48
英文抄錄	55

表 目 次

<표-1>	체벌의 교육적 필요성	19
<표-2>	체벌이 필요한 이유	20
<표-3>	체벌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22
<표-4>	체벌효과의 지속성	23
<표-5>	체벌의 목적	24
<표-6>	체벌의 기준	25
<표-7>	체벌의 방법	26
<표-8>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	27
<표-9>	체벌시 감정개입 정도	28
<표-10>	체벌과정	28
<표-11>	체벌의 관점	30
<표-12>	체벌의 시간차	30
<표-13>	체벌의 강도	31
<표-14>	체벌빈도가 높은 시기	32
<표-15>	체벌의 동가	32
<표-16>	체벌이 불만이었던 때의 원인	33
<표-17>	항의의(된) 주된 원인	34
<표-18>	항의 받은 체벌의 해결 방법	35
<표-19>	항의를 한(받은) 사례	36
<표-20>	체벌에 관한 교사의 경력별 견해	37

<표-21> 교사의 경력별 체벌의 시간차	38
<표-22> 교사의 경력별 체벌방법	39
<표-23> 교사의 경력별 체벌과 기분관계	40
<표-24> 교사의 경력별 체벌과정	41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교수-학습활동은 학교교육의 핵심이다. 이 교수-학습활동은 수업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학습활동)의 관계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업목표와 수업계획 하에 교사로서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 하에 학습지도 활동에 임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학습지도 행태를 가지게 된다. 즉 학습에 열성적인 학습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가해지지만 이에 상반되는 학습자에 대해서는 꾸중, 질책, 그리고 각종 체벌 등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교사는 학습지도상에서 늘 열성적인 학습자와 이에 상반되는 학습자 대상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는 칭찬과 격려, 꾸중과 질책, 체벌이 학습자 대상에 따라 교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지도과정에서의 교사의 체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계속 존재해 오고 있다.

체벌과 같은 지도 학생 행태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체벌이 교육적인 강화, 부적응 행동의 방지, 나쁜 버릇의 교정, 과제해결 능력의 함양, 학습결손 예방, 학습욕구의 증진, 부적응 행동의 예방적 효과와 치료적 효과를 수반하는 등 많은 교육적인 기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체벌은 아동의 자발성을 억제하고 학교에 대한 흥미를 상실케 할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상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적인 비난을 유발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잘 의도되고 계획된 체벌은 아동교육에 있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자는 체벌로 인하여 야기되는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및 아동의 체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긍정적인 체벌과 부정적인 체벌을 규명해 볼 필요성에서 본 연구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교사, 학부모 및 아동의 체벌관을 규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사의 처벌행위가 체벌인가, 체벌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였고,

둘째, 학교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규명하였다.

셋째, 학교체벌에 대한 각국의 경향들을 파악하였다.

넷째, 교사 학부모 및 아동의 체벌관을 규명하였다.

다섯째, 교육적인 체벌행태를 규정하였다.

여섯째, 체벌관에 대한 교사의 의식전환을 꾀하였다.

3. 研究의 方法 및 內容

연구방법은 교사, 학부모 및 아동의 체벌관을 밝히고자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체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교사, 학부모 및 아동의 체벌관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의 도구는 19개의 문항으로 작성된 설문지로 인적사항별 대상인원별
체벌관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1. 體罰의 意味

체벌은 교육상 행해지는 벌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체벌은 벌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두 용어가 혼용되어 활용된다.

이희승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체벌이란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¹⁾을 체벌이라 하였다. 또 교육학 사전에서는 체벌은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했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재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언행을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교육적인 벌의 일종임을 의미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행정적인 징계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법이나 각 학교교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체벌이란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이다²⁾라고 법적인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행위로서의 징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체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일본의 법무성에서는 生徒體罰 금지에 대한 교사의 마음가짐³⁾ 7個條를

1)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5), p.28.

2) 교육주보출판부, 「학교관리총서」, (서울: 교육주보사, 1971), p.280.

3) 정금선, “체벌의 교육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p.12.

발표에서 구체적인 체벌 사례를提示하고 있다.

- (1) 용변을 못보게 한다든가, 식사시간이 지나도록 교실에 유치하는 일은 육체적 고통을 주므로 체벌이 되어 위반된다.
- (2) 지각한 학생을 교실에 들이지 않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함은 허용될 수 없다.
- (3) 수업시간 중에 태만하거나 떠들거나, 숙제를 안해 온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 보내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
- (4)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시키는 경우는 응징하는 의미로 체벌이 안 될 정도로 남겨 놓는 것은 무방하다.
- (5)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학생과 증인을 방과 후 심문하는 것은 좋으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6) 지각이나 태만한 사실에 대해서 청소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무방하나 부당한 差別을 하거나 욕사를 시키면 안된다.
- (7) 지각방지를 위한 合同登校는 무방하나 군대 훈련의 색채를 띄우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처럼 日本은 체벌의 개념 및 체벌 행위의 종류를 밝혀, 敎師 징계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李東玉이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概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⁴⁾

- (1)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 또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4) 李東玉, “민주주의와 교육”, 「학생지도」, (제18호, 서울시 교육연구원, 1976), p.69.

고통을 주는 것 같은 징계가 이에 해당된다. 즉 무릎꿇고 앉히거나, 바로 서게 하는 것 등, 특정의 자세를 장시간 걸쳐서 유지시키는 것 같은 징계는 체벌의 일종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2) 용변을 못보게 하거나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없도록 잡아두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함으로써 체벌이 되고 교육법에도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각이나, 태만한 경우 청소당번 등의 횟수를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부당한 차별이나 혹사를 시키는 행위는 체벌이다.

(4) 도난사고시 그 학생이나 증인을 방과후에 심문하는 것은 좋으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체벌이다.

(5) 수업시간 중 태만하거나 떠들었다고 해서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체벌이다.

(6) 물건을 훔치거나 부숴버린 경우, 장시간 남겨놓는 행위는 체벌이다.

(7) 고의적으로 필요이상 정신적인 불안감, 긴장, 초조감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체벌이 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체벌이란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징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體 罰 觀

1) 肯 定 的 的 側 面

페스탈로찌(Pestalozzi)는 모든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인성

의 힘이 깃들여 있다⁵⁾고 하며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서 조화롭게 개발하자는 것이 교육방법의 핵심이면서, 체벌도 교육에 있어 불가피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그의 슈탄스 고아원의 기도에서 보면 “많은 어린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교육원리는 행복한 어린이나 좋은 환경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 단순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어떤 목표로 이끄는 데에는 체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한 사람 다루듯 보살피고 과오를 범한 어린이를 용서해 주려고 해도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체벌경험을 고백하고 있다.

또 그가 이벨당학원 시대에 한 학부모에게 보낸 “스케이트와 체벌”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체벌을 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같은 마음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페스탈로찌도 고아들의 집단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체벌이 행하여졌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체벌을 행하는 교사의 마음가짐이 그들의 어버이와 같은 사랑에서 연유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체벌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나 그 방법이 문제가 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플라톤은 체벌의 긍정적인 이유로 ①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②잘못된 행동에 응당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③그릇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⁶⁾ 라고 주장했다.

코메니우스(Comenius)는 체벌은 필요하지 않지만 신을 모독하는 일, 고의적으로 교사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악행을 하는 일, 친구가 요청한 일을 교만하게 거절했을 경우에는 체벌이 필요하다⁷⁾고 했다.

5) 김정환 역, 「페스탈로찌의 생애와 사상」. (서울: 박문사, 1975), p.87.

6) 김정환, 「전인교육론」, (서울: 세영사, 1982), p.157.

가드너(Gadner)는 체벌이 학습을 쉽게 할 뿐 아니라 체벌에 의한 자극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능한 교사는 최소한의 체벌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체벌을 많이 사용하는 교사일수록 체벌의 효과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과 아울러 대부분의 교사나 성인들은 체벌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⁷⁾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Ausubel과 Gnagey의 주장을 살펴보면⁸⁾

① 많은 청소년이 비행을 체벌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보고 있으며 그 비행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체벌이 공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자존심과 애정을 느낀다.

② 청소년들 중에는 장기적이고 긴장감이 가증되는 심리적 체벌보다는 체벌의 정도가 중간 정도이며 고통이 일순간 사라지는 체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③ 체벌은 불쾌한 자극과 고통, 위험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체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④ 체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효과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부드러운 형태로 사용하면 된다.

⑤ 체벌의 기준으로서 체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서 어린이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되면 어떤 체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알려주면 체벌이 효과가 있다.

7) 김정환, 「전인교육론」, (서울: 세영사, 1982), p.157.

8) 金正輝, “학생체벌과 체육”, 「학생지도 연구」, 제9집, pp.56~57.

9) 金正輝, 上掲論文, pp.56~57.

⑥ 인간의 문제행동을 개선, 교정, 선도, 감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방법이 체벌이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지 않은가? 라는 결론을 맺는다.

또한 Lorraine는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개념을 집어 넣어 주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며 체벌을 받지 않고 성장한 아동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나 다름없다¹⁰⁾고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금선도 일선 학교의 체벌행위를 단순한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찰위에서 가능한 기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체벌금지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¹¹⁾ 밝히고 있다.

또한 李星諺도 흔히 벌이라고 말할 때 그 벌은 체벌을 의미하며 벌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벌이 행동의 학습 및 수정에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¹²⁾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부적절한 행동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는 면에서 체벌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교육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否定的인 側面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여러 경우의 상태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론을 살펴보면 킨틸리아누스는 능력있는 교사라면 비효과적이고 불필요

10) 이봉삼, "상벌의 교육효과", 「교육연구」, 1976, 제9권, 5호.

11) 정금선, "체벌의 교육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p.12.

12) 이성진, 「행동수정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신서, 1977), p.219.

한 체벌을 과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체벌은 교육방법 중에서 가장 拙劣한 방식으로 습성화되기 쉬우며 공포심과 정신적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노예를 대상으로 하는 체벌을 自由人에게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낫트는 “訓育의 본질은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代案을 찾는데 있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한다는 것은 격한 감정을 북돋우어 주는 것이 되고 결국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인간이란 미덕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결코 벌로서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¹³⁾ 라고 했다.

김우창은 “체벌권장은 사회문제점의 표출이며 인간이기에 나타나는 폭력적 자기표현이 미화되고 규범화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며 교육의 강제력은 교육의 失敗를 뜻한다”¹⁴⁾고 보았다.

박상호도 “학생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있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성인들 자신이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의무가 있다”¹⁵⁾고 주장했다.

또한 권오익도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해 나가는 오늘의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폭력화한 체벌은 지양되어야 한다”¹⁶⁾고 주장했다.

체벌의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청환은 “체벌이 성격형성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증오자가 되고 불안하고 반항심을 갖게 되면 2중적인 성격과 순수성을 잃게 된다. 또한 독립적이지 못하고 열등감과 체벌의식을 느껴 부정적이고 고집센 사람이 되며 공포심을 갖고 창의력이 상실되며 공격적이 된다”¹⁷⁾고 하였다.

13) H.Giontt, 「교사와 학생」, 정우현 역, (서울: 익문사, 1973), p.118.

14) 김우창, “사랑의 매질”, 「고대교육신보」, 1983, 제119호.

15) 박상호, 전개서, pp.28~30.

16) 권오익, “체벌의 탈교육적 역기능”, 「교육연구」, 제9권, 5호(1976), p.87.

17) 오청환, “국민학교에서의 훈육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18.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의 연구에서 고통에 대한 최초의 반응은 그것을 피하는 행동이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인가에 공격을 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를 인간에 적용시켜보면 아이들은 먼저 거짓말을 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변명을 하고 죄를 피우든가 공상에 빠지고, 종교 거부로서 피하려고 하나 그것이 안되면 공격적이 되어 약한 친구를 해치게 된다¹⁸⁾고 했다.

이영준 연구에서도 체벌이 많은 가정의 아동은 체벌이 적은 가정의 아동보다 불안감과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다¹⁹⁾고 하였다.

코우닌과 굼프(Gump)는 벌을 많이 사용하는 교사가 지도하는 학급에서 그렇지 않은 학급에서 보다 더 많은 적개심과 공격성이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행동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학습활동에도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면서 벌이 기대한 결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행을 더 증가시키므로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밝혔다.²⁰⁾

또한 시몬스(Symonds)에 의하면 성인으로부터 많은 체벌을 받게되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우에 벌이 계속 가해지면 불안과 격노 및 적개심이 유발되는 빈도가 높아지므로 심리적으로 불건전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²¹⁾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요약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 이현자, "체벌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p.12.

19) 이영준, "아동체벌의 실태분석과 체벌이 아동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0, p.9.

20) 金正輝, 전게서, p.58.

21) 박성수 외, 「생활지도」,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 p.54.

- (1) 학생체벌은 불행한 정서적인 부산물을 낳는다.
- (2) 학생체벌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 (3) 학생을 체벌함에 있어 교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 (4) 학생체벌은 대체로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의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서, 체벌은 사려깊은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충동적, 감정적, 보복적인 경향이 강하다.
- (5) 학생체벌은 어떤 상황에서는 나쁜 버릇·행동을 고쳐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 (6) 체벌로 인한 불안이나 공포때문에 부적응행동 유발의 위험이 있다.
- (7) 체벌은 체벌을 받는 아동으로 하여금 현실도피적인 새로운 나쁜 행동을 습득케 할 우려가 있다. 체벌의 원 취지는 기대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아동의 입장에서는 체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나쁜 행동의 중단 대신에 벌받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체벌을 부정하는 측은 오늘의 현실적 상황에서 정당한 체벌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소년기에 학생에게 인격과 정서, 자아개념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에 뒤따르는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므로 가능한 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體罰에 관한各國의 體罰 動向

1) 美 國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저지를 제외한 47개 주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주에서 주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학교교육법에서는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및 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은 그 권한에 의해서 아동·학생에게 적절한 체벌을 가할 수 있다²²⁾고 규정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도 주법에 의해서 교사의 권위에 대한 의식적 불순종, 노골적 반항 또는 속되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학생에게는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행할 수 있다²³⁾고 자세히 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나 미주리주에는 체벌에 대해서 주법으로 정하지 않고 이를 각 학구에 일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테네시주의 가벌 카운터와 같은 학구에서는 규칙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교장은 아동·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벌을 행사할 수 있다.

(2) 체벌은 제3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원은 아동·학생에 대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벌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은 비공개로, 그리고 다른 교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22) 최영식, “중학생의 체벌에 대한 반응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학교 교육대학원, 1986, p.7.

23) 최영식, 상계논문, p.8.

내용을 당일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미국 교육계에서는 학생에 대한 체벌 문제가 여러 차례 법정에 제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미국의 연방최고 재판소는 체벌 문제는 각주 및 지방교육 당국의 권한에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체벌이 합헌적이라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교육연합회와 미국시민 자유보호협회 등이 주체가 되어 체벌 폐지의 권고를 제안함으로써 체벌폐지 운동이 고조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교사들은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日 本

일본은 학생에 대한 체벌을 法律的인 면에서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1879년의 교육령 제46조에서 학교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된다²⁴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실제면에서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1977년, 매일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벌의 이유, 때, 장소,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체벌을 가해도 좋다.” “교육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78%로 나타나 교사들은 체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1978년 한 고교사친회 연합회의 조사는 전체 73.3%의 학부모들이 교육적 체벌을 인정했으며, 78년 NHK가 동경역 통근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전체 91.1%의 시민이 체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체벌

24) 이희영, “체벌에 대한 교사, 학부모, 아동의 태도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교육대학원, 1987), p.30 재인용.

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은 6.1%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현행 학교 교육법에 학생들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체벌이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英 國

영국의 학교교육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체벌이 인정되어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원죄설에 따른 인간관이 지배하게 되어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초리에 의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것²⁵⁾이다.

물론 현재도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진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 교육당국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Stopp라는 체벌 반대의 입장을 취해온 교원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04개 지방교육 당국 중 68개의 LEA가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나머지 36개 LEA는 교장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⁶⁾

학생에 대한 체벌은 남학생의 경우엔 회초리로 불기를 때리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고, 여학생에 대하여는 주로 손바닥을 때리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그리고 맨체스터시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을 가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나누어 주고 있다. 단 아동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에

25) 이희영, 上揭論文, p.31 재인용.

26) 이희영, 上揭論文, p.31 재인용.

는 반드시 그 다음날에 체벌을 가하게 되어 있다. 보복적이거나 감정적인 체벌을 피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에 통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한 후 체벌대장에 올려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²⁷⁾고 한다.

최근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매질을 포함한 학생 체벌을 폐지시키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231대230 단 1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86년 4월 상원에서 92대 90으로 통과 되었었다. 이 법은 1987년 8월 부터 발효 되는 데 사립학교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이다.²⁸⁾

4)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이전까지는 영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회초리에 의한 체벌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인간주의 교육관이 지배하게 됨에 따라 점차 체벌이 금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5년 국민공회의 공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국민학교내 관리규칙안 제5조에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후 체벌을 인정하는 듯한 정책을 펴오다가 본격적으로 금지된 것은 1887년의 국민학교기준 학교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칙은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체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국민학교에서 사용하는 징벌은 낮은 평가, 질책, 놀이시간단축, 교원 감독하에 남아있기, 정학 등으로 제한한다.

27) 金善陽, 「교육사 신강」, (서울: 익문사, 1972), p.202.

28) 朴昌來, “영국 회초리교육 사라진다”, 「동아일보」, 86.12.

제20조: 학생에게는 어떠한 체벌도 금지한다. 교원이 아동을 어지럽게 들게하는 것까지 금지한다.²⁹⁾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학교교육 실제에서는 학생의 귀를 잡아당긴다든가, 뺨을 때리는 정도의 체벌은 행해지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체벌을 허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73년 르뽀왕지는 “만일 선생님이 너를 때렸다면 너의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³⁰⁾

(1) 부모들이 분개해서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으러 갈 것이다. 그러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정도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48%).

(2) 선생님이 그 이유를 부모님께 설명하면 집에서 두번재로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28%).

(3) 선생님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부모도 그 행위를 인정할 것이다(26%).

5) 西 獨

독일의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학교의 교원에게는 체벌을 포함한 징계권이 관용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서독은 최근까지 체벌을 허용하여 왔는데, 이는 1957년 법원의 판결에서 교원에게 적당한 체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초부터 서독도 유럽제국의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체벌

29) 박준희 역, 증원풍, 「학교체벌」, (서울: 민정사, 1982), pp.112~113.

30) 이희영, 전개논문, p.33 재인용.

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모든 원칙적으로 체벌을 인정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헝가리에서는 1972년의 일반법 제9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수단, 특히 집단벌 및 모든 체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³¹⁾고 하여 체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1976년 바덴·뉘른베르크주에서도 학교법 제89조에서 “체벌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 함부르크주의 학교법 제12조에도 “모든 교원은 체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학생에 대한 신체·정신적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학생의 예정대로의 관념을 손상시키는 조치는 모두 이를 금지한다”³²⁾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체벌에 관한 각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법 시행령 제83조에 학교장의 교육적 견지에서 학생의 근신·정학·퇴학 등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의 징계권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교사들은 학생지도 활동에 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의 동향을 요약하면,

(1) 미국 - 각 주 및 지방교육당국에 위임하고 있으나 합헌적이라는 입장이다.

(2) 일본 - 교육법에는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벌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3) 영국 - 체벌폐지 교육법 통과, 1987년, 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

(4) 프랑스 -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가벼운 체벌은 행해지고 있다.

31) 이희영, 상계논문, p.34 재인용.

32) 이희영, 상계논문, p.34 재인용.

Ⅲ. 結果分析 및 解釋

1. 體罰의 必要性에 관한 見解

학교 교육현장에서 體罰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1>과 같다.

<표-1> 體罰의 교육적 필요성

(단위: %)

대 상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대단히 필요하다.	18	3.750	10	6.250	8	5.000		0
필요할 때도 있다.	428	89.167	144	90.000	142	88.750	142	88.750
해서는 안된다.	34	7.083	6	3.750	10	6.250	18	11.250
계	480	100	160	100	160	100	160	100

교사, 학부모, 아동의 전체적 경향을 보면 體罰을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는 각각 96%, 94%, 89%로 교사, 학부모, 아동은 體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體罰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아동의 집단(11.250%)과 학부모의 집단(6.25%)에서 무시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히 있으므로 체벌에 대한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다고 볼 수 있다.

2) 體罰이 필요한 이유

<표-2> 體罰이 필요한 이유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학습의 능률제고	30	6.726	6	3.896	16	10.667	8	5.634
② 올바른 생활교육 일력	320	71.749	110	71.429	92	61.333	118	83.099
③ 바람직한 인격형 성을 위하여	96	21.525	38	24.675	42	28.000	16	11.268
계	446	100	154	100	150	100	142	100

위 <표-2>에 의하면 전체적인 경향은 72%가 아동의 올바른 생활교육을 위하여 體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능률을 위하여라는 반응은 전체의 7%였다. 한편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體罰이 필요하다는 반응에는 전체의 22%가 응답하였다.

학습의 능률을 위하여 體罰이 필요하다는 반응에는 아동은 전혀 원치 않았으며 교사보다는 오히려 학부모가 아동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體罰이 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2) 體罰이 필요한 이유

<표-2> 體罰이 필요한 이유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학습의 능률제고	30	6.726	6	3.896	16	10.667	8	5.634
② 올바른 생활교육 일력	320	71.749	110	71.429	92	61.333	118	83.099
③ 바람직한 인격형 성을 위하여	96	21.525	38	24.675	42	28.000	16	11.268
계	446	100	154	100	150	100	142	100

위 <표-2>에 의하면 전체적인 경향은 72%가 아동의 올바른 생활교육을 위하여 體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능률을 위하여라는 반응은 전체의 7%였다. 한편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體罰이 필요하다는 반응에는 전체의 22%가 응답하였다.

학습의 능률을 위하여 體罰이 필요하다는 반응에는 아동은 전혀 원치 않았으며 교사보다는 오히려 학부모가 아동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體罰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 體罰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표-3> 體罰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인권존중의 의미		0		0		0		0
②때리기 보다는 타일러야	32	94.118	6	100	8	80.000	18	100
③정서적 발달을 저해	2	5.882		0	2	20.000		0
계	34	100	6	100	10	100	18	100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體罰반대 이유의 전체적인 경향은 體罰 보다는 감정에 호소하여 타이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서적 발달 저해요인이 6%이고, 어린이의 인권존중을 위해서는 무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거의 모두가 때리기 보다는 잘 타일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體罰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2. 體罰에 대한 態度

1) 體罰효과의 지속성

<표-4> 體罰 효과의 지속성

대 상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순간적	134	28.270	40	25.316	16	10.127	78	49.367
② 단기적	216	45.570	78	49.367	68	43.038	70	44.304
③ 장기적	100	21.097	36	22.785	56	35.443	8	5.063
④ 지속적	24	5.063	4	2.532	18	11.392	2	1.266
계	474	100	158	100	158	100	158	100

<표-4>에서 체벌효과의 지속성의 전체적인 경험은 순간적이다. 28%, 단기적이다 46%, 장기적이다 21%, 지속적이다 5%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학부모 집단의 장기적이라고 응답한 35%의 수치와 교사집단의 장기적이라고 응답한 23%의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서 교사와 학부모는 체벌의 효과를 단기적, 장기적이라고 보는 반면 아동은 단기적이나 순간적으로 보아 많은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다.

2) 체벌의 목적

<표-5> 체벌의 목적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학습태도	134	28.151	54	33.750	40	25.316	40	25.316
② 성적 향상	40	8.403	10	6.250	16	80.000	14	8.861
③ 나쁜 습관의 교정	206	43.277	66	41.250	68	43.038	72	45.570
④ 나쁜 성격의 교정	80	16.807	30	18.750	26	16.456	24	15.190
⑤ 교사의 권위 유지	16	3.361			8	5.063	8	5.063
계	476	100	160	100	158	100	158	100

<표-5>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경향은 나쁜 습관의 교정(43.277%), 학습태도(28.482%)의 형성 및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를 세분해서 분석해보면 교사는 나쁜 습관을 교정과 함께 학습태도를 강조하였으며 학부모는 나쁜 습관의 교정과 함께 학습태도와 나쁜 성격의 교정을 위하여 체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의 반응도 교사·학부모와 거의 비슷하나 특히 체벌이 교사의 권위를 위하여 행사된다는 반응도 5%나 되었다.

3) 체벌의 기준

<표-6> 체벌의 기준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일정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196	28.151	76	47.500	64	41.026	56	36.364
②기준이 없고 형편 에 따라	164	34.894	54	33.750	60	38.462	50	32.468
③우발적으로 가한다.	90	19.149	24	15.000	30	19.231	38	23.377
④기 타	20	4.255	6	3.750	2	1.282	12	7.792
계	470	100	160	100	156	100	154	100

위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형편에 따라 체벌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5%에 이르고 있다. 한편 42%의 응답자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가한다고 반응하였다. 한편 교사와 학부모집단은 일정한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가한다에 각각 48%, 41%의 반응을 보이고 기준없이 형편에 따라 가한다에는 각각 34%, 38%의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아동은 기준없이 형편에 따라 가한다와 우발적으로 가한다에 56%의 높은 반응을 보여 교사나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교사의 체벌이 객관적 기준없이 감정적으로 가하여진다고 느끼는 아동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체벌의 방법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체벌할 때 손바닥을 자나 매로 때리는 것이 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벌로 청소를 시키는 방법과 눈을 감고 반성하게 하는 방법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체벌의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을 골고루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체벌의 방법

대 상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손바닥을 자나 매 때리는 방법	284	17.509	86	16.165	102	18.750	96	17.582
②엉덩이를 매로	84	4.932	30	5.639	28	5.147	22	4.029
③종아리를 매로	36	2.219	12	2.256	8	1.471	16	2.930
④손바닥으로 뺨을	84	5.179	32	6.015	24	4.412	28	5.128
⑤발로 엉덩이를	54	3.330	14	2.632	20	3.676	20	3.663
⑥등, 허리를 손바닥으로	74	4.562	24	4.511	32	5.882	18	3.297
⑦알밤을 주는	86	5.302	38	7.143	30	5.515	18	3.297
⑧꿇어 앉히는 방법	152	9.371	56	10.526	50	9.191	46	8.425
⑨복도로 내 보내는 방법	104	6.412	36	6.767	34	6.250	34	6.227
⑩엎드려 뺨혀 시키는	102	6.289	36	6.767	34	6.250	32	5.861
⑪손들고 서게하는	160	9.864	54	10.150	50	9.191	56	10.256
⑫눈감고 반성하게	196	12.084	66	12.406	60	11.029	70	12.821
⑬벌로 청소를	210	12.947	48	9.022	72	13.235	90	16.484
계	1622		532	100	544	100	546	100

5)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

<표-8>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

대 상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많이 달라진다.	160	33.755	4	2.532	76	48.101	80	50.633
② 조금 달라진다.	252	53.165	122	77.215	60	37.975	70	44.304
③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62	13.080	32	20.253	22	13.924	8	5.063
계	484	100	158	100	158	100	158	100

<표-8>에서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기분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6.920%). 이를 세분해 볼 때, 교사, 학부모, 아동집단에서 각각 80%, 86%, 9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교사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 20%인 반면에 학부모와 아동은 많이 달라진다가 48%와 51%로 응답하고 있어 체벌을 가하는 교사와 이를 받아들이는 학부모와 아동의 견해가 다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아동집단의 반응을 주목할만 하다.

6) 체벌과정에서의 감정개입정도

<표-9> 체벌과정의 감정개입 정도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많이 개입된다.	132	27.615	6	3.750	60	37.500	66	41.772
② 가끔 개입된다.								
③ 거의 개입되지 않다.	216	45.188	74	46.250	70	43.750	72	45.570
④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110	23.013	68	42.500	24	15.000	18	11.392
	20	4.184	12	7.500	6	3.750	2	1.266
계	478	100	160	100	160	100	158	100

<표-9>에 의하면 체벌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개입된다는 교사는 4%, 학부모는 38%, 아동은 42%로 나타났고, 가끔 개입된다는 교사는 46%, 학부모는 44%, 아동은 46%로써 감정개입을 긍정적인 응답이 교사는 50%, 학부모는 81%, 아동은 87%로 나타나 학부모 및 아동집단에서 특히 교사가 체벌하는 과정에 감정이 많이 개입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7) 체벌의 일반적인 과정

체벌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0> 체벌과정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체벌후 설득한다.	52	10.833	14	8.750	16	10.000	22	13.750
② 잘못을 인식시킨 후 체벌	228	47.500	110	68.750	70	43.750	48	30.000
③ 체벌하고 반성	164	34.167	32	20.000	64	40.000	68	42.500
④ 체벌로 끝낸다.	36	7.500	4	2.500	10	6.250	22	13.750
계	480	100	160	100	160	100	160	100

위 <표-10>에서와 같이 체벌과정의 전체적인 경향은 먼저 잘못을 인식시키고 난후 체벌한다(47.500%), 체벌하고 스스로 반성시킨다(34.167%), 체벌후 설득시킨다(10.8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해 볼 때 교사, 학부모, 아동집단은 잘못을 인식시킨후 체벌한다에 각각 69%, 44%, 30%를 나타내었다. 한편 아동집단에서는 체벌하고 반성시킨다에 42.500%라는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교현장에서 먼저 체벌이유를 밝혀 아동을 이해시킨후 체벌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동은 체벌을 하고 반성시킨다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부모 집단과 아동집단에서 체벌로 끝낸다는 반응도 6%와 14%라는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다.

8) 체벌의 관점

<표-11> 체벌의 관점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동기 중시	348	72.500	144	90.000	114	71.250	90	56.250
② 결과 중시	132	27.500	16	10.000	46	28.750	70	43.750
계	480	100	160	100	160	100	160	100

위 <표-11>에 의하면 체벌을 할 때 전체적인 경향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사집단은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한다는 반응이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부모도 동기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지만 (71.250%) 교사집단보다는 낮고 아동집단은 56%로 더욱 나타나고 있다.

9) 체벌의 시간차

<표-12> 체벌의 시간차

질문내용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즉시 해야한다	276	57.741	84	52.500	100	62.500	92	58.228
② 기회를 보아서	148	30.962	56	35.000	48	30.000	44	27.848
③ 미루었다가	54	11.297	20	12.500	12	7.500	22	13.924
계	478	100	160	100	160	100	158	100

위 <표-12>에서 체벌의 시간차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은, 즉시한다가 55%, 기회를 보아서 한다가 36%로 나타났으며 미루었다가 한다는 반응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교사·학부모·아동 모두 즉시해야 한다는 높은 반응을 보였다.

10) 체벌의 강도

아래의 <표-13>에서 보면 전체적인 체벌의 강도 경향은 강하게가 35%, 약하게가 62%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13> 체벌의 강도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매우 강하게	12	2.532	4	2.500	3	3.846	2	1.266
② 강하게	168	35.443	70	43.750	50	32.051	48	30.380
③ 약하게	294	62.025	86	53.750	100	61.103	108	68.354
계	474	100	160	100	156	100	158	100

교사집단은 강하게가 44%, 약하게가 54% 인데 반하여 학부모는 강하게가 32%, 약하게가 64%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집단은 강하게가 30%, 약하게가 68%의 반응을 보이며 교사집단보다는 학부모집단이, 학부모집단보다는 아동집단이 체벌을 약하게 하여야 한다는데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11) 체벌빈도가 높은 시기

아래의 <표-14>에서와 같이 체벌의 빈도가 높은 시기는 전체적으로 학년초 53%, 학년중간 41%, 학년말 6%이었다. 교사는 대체적으로 학년초 86%, 학부모는 학년초 41%, 학년중간 48%의 반응이고 아동은 학년초 33%, 학년중간 63%의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14> 체벌빈도가 높은 시기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학년 초	282	52.941	136	86.076	64	40.506	52	32.500
② 학년 중간	194	40.756	18	11.392	76	48.101	100	62.500
③ 학년 말	30	6.303	4	2.532	18	11.392	8	5.000
계	476	100	158	100	158	100	158	100

12) 체벌의 동기

<표-15> 체벌의 동기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교사의 권위유지	34	7.143	4	2.500	20	12.658	10	6.329
② 지나친 열의	54	11.345	36	22.500	6	3.797	12	7.595
③ 그릇된 행동	348	73.109	96	60.000	128	81.013	124	78.481
④ 학습 부진	40	8.403	24	15.000	4	2.532	12	7.595
계	476	100	160	100	158	100	158	100

위 <표-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한) 전체적인 경향은 아동의 그릇된 행위(73.109%)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교사·학부모·아동 모두 아동의 그릇된 행위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이것은 아동의 생활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체벌이 많이 행하여 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집단에서 교사의 지나친 열의에 의하여 체벌이 가하여지는 경우도 23%의 적지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13) 체벌이 불만이었던 때의 원인

<표-16> 체벌의 불만이었던 때의 원인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교육적이 아님	52	12.621	8	8.696	36	22.500	8	5.000
② 감정개입	132	32.039	16	17.391	64	40.000	52	32.500
③ 방법의 부적당	106	25.728	36	39.130	30	18.750	40	25.000
④ 체벌이 지나침	84	20.388	24	26.087	24	15.000	36	22.500
⑤ 편애하는 체벌	38	9.223	8	8.696	6	3.750	24	15.000
계	412	100	92	100	160	100	160	100

학교에서의 체벌이 가장 불만이었던 때의 원인은 위 <표-16>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감정개입(32.039%), 방법의 부적당(25.728%), 체벌이 지나침(20.388%)의 순이었다. 교사집단은 방법의 부적당, 학부모 집단은 감정개

입, 아동집단은 감정개입 및 체벌의 지나침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결국 체벌에 불만을 느끼는 직접적인 원인은 감정개입, 방법상의 부적당, 체벌이 지나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14) 항의의(된) 주된 원인

<표-17> 항의의(된) 주된 원인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학부모의 무지	10	3.378	10	10.638	0	0	0	0
② 학부모의 극성	50	16.892	50	53.191	0	0	0	0
③ 교사와의 감정	34	11.486	8	8.511	16	14.286	10	11.111
④ 지나친 체벌	178	60.135	16	17.021	86	76.786	76	84.444
⑤ 다른 사람의 충동	20	6.757	6	6.383	10	8.929	4	4.444
⑥ 공연한 트집	68	1.351	4	4.255	0	0	0	0
⑦ 기 타								
계	296	100	94	100	112	100	79	100

학교에서의 체벌시 학부모가 항의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응답한 결과는 <표-17>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경향은 지나친 체벌(60.135%), 학부모의 극성(16.892%)등의 반응을 보였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사집단은 학부모의 극성(53.191%)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학부모 집단과 아동의 집단은 교사의 지나친 체벌에 각각 77%와 84%의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결국 교사는 학교에 항의된 체벌의 주된 원인이 학부모의

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반면에 학부모와 아동은 교사의 지나친 체벌이 항의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15) 항의를 받은 체벌의 해결 방법

<표-18> 항의받은 체벌의 해결방법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상호 사과	202	44.889	60	37.975	62	39.744	80	58.824
② 교사가 사과	98	21.778	54	34.177	26	16.667	18	13.235
③ 학교장에게 항의	38	8.444	8	5.063	16	10.258	14	10.294
④ 치료비의 지급	42	9.333	10	6.329	24	15.385	8	5.882
⑤ 학부모의 사과	46	10.222	18	11.392	20	12.821	8	5.882
⑥ 기타 제 삼자 중재	24	5.333	8	5.063	8	5.128	8	5.882
계	450	100	158	100	156	100	136	100

위 <표-18>에서 전체적인 경향은 상호사과(44.889%), 교사가 사과(21.778%)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집단은 상호사과(37.975%)도 높으나 교사사과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반면, 학부모집단과 아동집단은 상호사과가 각각 40%와 59%로 절대적이나 교사사과와 함께 학교장에게 항의도 높게 나타났다.

16) 항의를 한(받은) 사례

<표-19> 항의를 한(받은) 사례

대 상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아 동	
	f	%	f	%	f	%	f	%
① 대단히 많다.	4	1.047	0		2	1.563	2	1.786
② 조금은 있다.	26	6.806	10	7.042	12	9.375	4	3.571
③ 거의 없다.	76	19.895	36	25.352	24	18.750	16	14.286
④ 전혀 없다.	276	72.251	96	67.606	90	70.313	90	80.357
계	382	100	142	100	128	100	112	100

위 <표-19>와 같은 전체적인 경향은 항의를 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92%로 매우 높다. 교사는 항의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93%로 매우 높으며, 학부모는 89%, 아동은 95%로 세 집단 모두 체별로 인하여 항의를 받은 경험과, 항의를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답하고 있다.

3. 敎師의 經歷別 體罰의 見解

1) 체벌에 관한 교사의 경력별 견해

<표-20> 체벌에 관한 교사의 경력별 견해

대 상	전 체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f	%	f	%	f	%	f	%	f	%	f	%
대단히 필요하다.	10	6.250	2	10	2	4.762	2	5.882	0	0	4	10
필요할 때도 있다.	144	90.000	16	80	40	95.238	30	88.235	22	91.667	36	90
해서는 안된다	6	3.750	2	10	0	0	2	5.882	2	8.333	0	0
계	160	100	20	100	42	100	34	100	24	100	40	100

<표-20>에 의하면 체벌에 관한 견해를 교사의 경력별로 분석한 결과 각 집단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특히 교직 경력이 6~10년 사이의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높게(100%)나타났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체벌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교사의 경력별 체벌의 시간차

<표-21> 교사의 경력별 체벌의 시간차

대 상	전 체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f	%	f	%	f	%	f	%	f	%	f	%
①즉시해야 한다.	84	52.500	16	80	24	57.143	20	58.824	12	50.000	12	30.000
②기회를 보아서	56	35.000	2	10	14	33.333	10	29.412	8	33.333	22	55.000
③미루었다가	20	12.500	2	10	4	9.524	4	11.765	4	16.167	6	15.000
계	160	100	20	100	42	100	34	100	24	100	40	100

위의 <표-21>에서와 같이 교사의 경력에 따른 체벌의 시간차를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53%가 즉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를 보아서 한다가 35%, 미루었다가 한다가 13%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경력 5년 이하의 교사는 전체의 80%가 즉시해야 한다고 반응을 보인 반면 경력이 21년 이상인 교사의 집단은 30%만이 즉시해야 한대에 반응을 보였고 기회를 보아서 한다가 55%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체벌을 미루었다가 하는 경향이 있다.

3) 교사의 경력별 체벌방법

<표-22> 교사의 경력별 체벌방법

대 상	전 체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f	%	f	%	f	%	f	%	f	%	f	%
①손바닥을 매나 자로	86	16.165	24	22.222	20	18.182	16	14.545	14	14.286	12	11.321
②엉덩이를 때 매로	30	5.639	6	5.556	8	7.273	6	5.455	4	4.082	6	5.660
③종아리를 매로	12	2.256	2	1.852	2	1.818	2	1.818	2	2.041	4	3.774
④손바닥으로 뺨을	32	6.015	6	5.556	8	7.273	10	9.091	6	6.122	2	1.887
⑤발로 엉덩이 를	14	2.632	4	3.704	2	1.818	4	3.636	2	2.041	2	1.887
⑥등, 허리를 손바닥으로	24	4.511	8	7.407	4	3.636	6	5.455	4	4.082	2	1.887
⑦알밤을 주는	38	7.143	4	3.704	6	5.455	8	7.273	8	8.163	12	11.321
⑧꿇어 앉히는	56	10.526	8	7.407	10	9.091	10	9.091	12	12.245	16	15.045
⑨복도로내 보내는	36	6.767	12	11.111	8	7.273	8	7.273	6	6.122	2	1.887
⑩엎드려 뺨혀	36	6.767	8	7.407	10	9.091	8	7.273	6	6.122	4	3.774
⑪손들고 서게 하는	54	10.150	8	7.407	10	9.091	10	9.091	10	10.204	16	15.094
⑫눈감고 반성	66	12.406	8	7.407	12	10.909	10	9.091	16	16.327	20	18.868
⑬벌로 청소	48	9.023	10	10.638	10	9.091	12	10.909	8	8.163	8	7.547
계	532	100	108	100	110	100	110	100	98	100	106	100

교사들이 사용하는 체벌방법에 관한 결과는 위 <표-22>와 같으며 전체적인 경향은 체벌할 때 손바닥을 지나 매로 때리는 것이 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5년 이하가 22%, 21년 이상이 11%로 경력이 짧은 교사일수록 손바닥을 지나 매로 때리는 체벌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체벌방법으로는 교사의 경력에 별로 관계없이 모두 비슷하게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사의 경력별 체벌과 기분 관계

<표-23> 교사의 경력별 체벌과 기분관계

대 상	전 체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f	%	f	%	f	%	f	%	f	%	f	%
① 많이 달라진다.	4	2.532	2	10	2	4.762	0	0	0	0	0	0
② 조금 달라진다.	123	77.215	14	70	34	80.952	30	88.235	16	66.667	28	73.684
③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32	20.253	4	20	6	14.286	4	11.765	8	33.333	10	26.316
계	158	100	20	100	42	100	34	100	24	100	38	100

위 <표-23>에서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80%의 많은 교사들이 기분에 따라 체벌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하고 있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경력 11년~15년의 교사집단이 가장 높은 반응(88.235%)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16~20년 경력의 집단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84.714%).

전체적으로 볼 때 교사의 경력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교사가 기분에 따라 체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 매우 유의할 필요

가 있는 문제이다.

5) 체벌의 과정

<표-24> 교사의 경력별 체벌과정

대 상	전 체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f	%	f	%	f	%	f	%	f	%	f	%
①먼저 체벌하고 뒤에 설득한다	14	8.750	4	20	4	9.524	4	11.765	0	0	2	5.000
②잘못을 인식시 킨 후 체벌	110	68.750	10	50	30	71.429	24	70.588	16	66.667	30	75.000
③체벌하고 반성	32	20.000	4	20	6	14.286	6	17.647	8	33.333	8	20.000
④체벌로 끝낸다	4	2.500	2	10	2	4.762	0	0	24	0	0	0
계	160	100	20	100	42	100	34	100	24	100	40	100

위 <표-24>에서와 같이 체벌과정의 전체적인 경향은 먼저 잘못을 인식시키고 난후 체벌한다(68.750%), 체벌하고난후 반성시킨다(20.000%), 체벌후 설득시킨다(8.7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해 볼 때 경력에 별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경력이 5년이하의 교사집단에서 먼저 체벌하고 뒤에 설득한다는 반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20%).

Ⅳ. 要約 및 結論

1. 要約

1) 학교현장에서의 아동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96%), 학부모(93%), 아동(88%) 집단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는 체벌의 효과를 단기적, 장기적 이라고 보는 반면 아동은 단기적이거나 순간적인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 체벌의 기준에 대해서는 교사(47.500%)와 학부모(41.026%)는 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가한다라고 응답하였고, 아동은 기준없이 형편에 따라 우발적으로 가한다(55.803%)는 반응을 보였다.

4) 학교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체벌 방법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잣대나 매로 손바닥을 때리는 것에 높은 반응을 보여 체벌시에는 매 등의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체벌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아동집단 모두 '먼저 잘못을 인식시키고 난 후 처벌한다'에 높은 반응을 보여 체벌과정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체벌의 강도는 교사보다는 학부모가, 학부모보다는 아동이 약하게 하여야 한다는 데 높은 반응을 보였다.

7) 체벌은 그 원인이 아동의 그릇된 행위 때문에 가해진다는 반응이 교사 학부모 아동집단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다.

8) 아동체벌에 대한 항의를 받거나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세 집단 모두 동일한 태도를 나타내어 항의를 한(받은) 사례가 적음을 보여 주었다.

9) 체벌에 관한 교사의 경력차에 따른 견해에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경력에 관계없이 체벌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10) 교사의 경력에 따른 체벌의 시간차에서는 대체적으로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체벌을 미루었다가 하는 경향이 있다.

11) 교사의 경력별 체벌 방법에는 경력이 짧은 교사일수록 자나 때로 손바닥을 때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손들고 서게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結 論

1)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및 아동 모두가 긍정적이었다. 대신에 지나친 체벌은 모두가 원치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가벼운 체벌은 학교 현장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체벌 과정에서 감정 개입 정도에서는 학부모와 아동집단에서 감정이 많이 개입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와 아동간, 교사와 학부모간의 불화의 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좀더 객관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체벌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상태에 따른 체벌은 행사하지 말아야 하겠다.

3) 체벌의 방법면에서는 교사의 경력에 관계없이 손바닥을 자나 때로 때

리는 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나 매로 손바닥을 때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 아동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체벌의 방법을 좀더 연구 개선하여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체벌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동기를 중시하는 쪽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학부모와 아동집단에서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쪽에도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우리의 교육풍토가 아직도 동기보다는 행위의 결과를 시험위주의 결과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하는 자료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받는 행동을 야기케하는 전체적 장면을 더 깊이 분석하여 그 원인 규명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체벌의 강도는 학부모와 아동 모두 약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확고한 기준하에서 정당한 체벌이어야 하며, 그 체벌이 교육적인 한계를 넘지 않는 체벌이 되어야 하겠다.

參考文獻

- 강원근, “學校의 賞罰實態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79.
- 教育週報社 출판部, 「學校管理總書」, 서울: 教育週報社, 1971.
- 「教育學大辭典」, 서울: 教育科學社, 1977.
- 「教育學 用語辭典」, 서울: 배영사, 1981.
- 權五鎰, “體罰의 脫教育的 逆機能”, 「教育研究」(제9권 5호), 1976.
- 金光雄, 「幼兒生活指導」, 서울: 학문사, 1983.
- 金鳳守, 「世界教育思想史」, 서울: 창성출판사, 1967.
- 金善陽, 「教育史新講」, 서울: 익문사, 1972.
- 金容淑, 「學校와 地域社會」, 서울: 대방출판사, 1982.
- 金允河, “學生處罰에 대한 教師 및 學父母의 態度分析”, 碩士學位論文, 釜山大學校 大學院, 1978.
- 金廷鎬, “體罰의 수용도가 行動變化에 미치는 影響”,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3.
- 金彰洙, 「教育判例解說」, 서울: 教學社, 1981.
- 金丁煥, 「教育의 本質과 課題」, 서울: 博英社, 1975.
- 페스타로찌, 「強者の 黃昏」, 金丁煥譯, 서울: 서문당, 1972.
- 金丁煥, 「페스타로찌의 生涯와 思想」, 서울: 博英社, 1975.

- 金正輝, “學生體罰과 教育”, 「學生指導研究」 제9집, 춘천교대 학생지도 연구소, 1984.
- 김우창, “사랑의 매질”, 「高大 教育新報」 제119호, 1983.
- 金容基, 「西洋教育史」, 서울: 문헌사, 1955.
- 金學守·李熙道, 「現代教授學習論」, 서울: 教育科學社, 1976.
- 羅進烈, “行動評價보다 個人思考 認識해야”, 「教育研究」 제9권 15호, 1976.
- 文敎部, 「體育史」 體育教育資料總書 7, 서울: 서울新聞社 出版局, 1973.
- 朴商浩, “賞과 罰의 教育的 意義”, 「새교육」 제193호, 1970.
- 朴時仁 譯, 「플르타르크 영웅전」, 서울: 乙酉文化社, 1960.
- 朴性洙外, 「生活指導」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
- 沖源豊, 「學校體罰」 박준희 譯, 서울: 正民社, 1983.
- 余龍云, “學習에 있어서 體罰은 必要한가”, 「진주교육대학 논문집」, 1975.
- 吳清煥, “國民學校에서의 體育에 관한 일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6.
- 원호택, 「學生指導」, 서울시 教育研究院, 1976.
- 유재곤, “學生處罰에 관한 教師와 學父母의 態度 比較分析”, 碩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81.
- 李發成, “行動指導와 賞罰”, 「教育研究」 (1976.5).
- 李敎熙, 「教育哲學概論」, 서울: 博英社, 1977.
- 李東玉, “民主主義와 教育”, 「學生指導」 제18호, 서울시 教育研究院, 1976.
- 李星珍, 「學校에서의 行動修正」, 서울: 배영사, 1980.
- _____, 「행동수정의 원리」, 서울: 教育科學新書, 1977.

- 李英垞, “兒童體罰의 實態分析과 體罰이 兒童 性格形成에 미치는 影響”, 碩士學位論文, 釜山大學校 大學院, 1980.
- 이현자, “體罰이 自我概念 形成에 미치는 影響”,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3.
- 이희승, 「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館, 1975.
- 릿 셸, 「러셀 教育論」 林漢英 譯, 서울: 民衆書館, 1968.
- 全國教育大學 兒童發達 生活指導 研究會篇, 「兒童發達과 生活指導」, 서울: 教育出版社, 1980.
- 田英吉, “國民學校에 있어서 兒童體罰에 대한 精神衛生學的 研究”, 「마산 교대 논문집」, 1973.
- 鄭琴仙, “體罰의 教育學的 考察”, 경북대학교 대학원, 1976.
- 정진곤, “倫理的 教育的 概念으로서의 罰”,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8.
- 鄭忠教, “教師의 學生體罰은 不可避하다” 「教育新報」(1986.12.8).
- H.Ginott, 「教師와 學生」, 정우현 譯, 서울: 익문사.
- Ulich, Robert, Education in Western Cul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5.
- good, Harry G.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9.
- 小野潤, 「體罰의 教育學的 考察, 大分大學校教育學部絶要, 1968.

학교체벌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학교 체벌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해 느끼신대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조사 결과는 연구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3. 3.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 영 환

<인 적 사 항>

※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여 주십시오.

1. 대 상 : 교 사 _____, 학부모 _____, 아 동 _____.
2. 교사의 경력: 5년 이하 _____, 6~10년 _____, 11~15년 _____.
(교사만 기재) 16~20년 _____, 21년 이상 _____.
3. 학부모의 연령: 25세 이하 _____, 30세 이하 _____, 35세 이하 _____.
(학부모만 기재) 40세 이하 _____, 45세 이하 _____, 50세 이하 _____.
4. 아동의 학년: 3학년 _____, 4학년 _____, 5학년 _____.
(아동만 기재) 6학년 _____.

질문지

※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여 주십시오.

1.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대단히 필요하다.

_____ ② 필요할 때도 있다.

_____ ③ 해서는 안된다.

2.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학습의 능률을 위하여

_____ ② 올바른 생활 교육을 위하여

_____ ③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3. 위 (1번 문항)에서 ③을 택하신 분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인권존중의 의미에서

_____ ② 아동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리기보다는 타일러야 한다.

_____ ③ 체벌은 심리적 억압을 당해 정상적인 성격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4. 학교에서의 체벌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순간적이다.
_____ ② 단기적이다.
_____ ③ 장기적이다. (오래)
_____ ④ 지속적이다 (대단히)

5. 학교에서의 체벌은 주로 어떤 면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학습 태도면
_____ ② 성적 향상면
_____ ③ 나쁜 습관의 교정면
_____ ④ 나쁜 성격의 교정면
_____ ⑤ 교사의 권위 유지면

6. 학교에서는 체벌을 어떤 기준에서 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가한다.
_____ ② 기준이 없고 형편에 따라 가한다.
_____ ③ 교사의 기분에 따라 가한다.
_____ ④ 기타

7.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체벌은 주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손바닥을 자나 매로 때리는 방법

- _____ ② 엉덩이를 때로 때리는 방법
- _____ ③ 종아리를 때로 때리는 방법
- _____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방법
- _____ ⑤ 발로 엉덩이 등을 차는 방법
- _____ ⑥ 등, 허리,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방법
- _____ ⑦ 알밤을 주는 방법
- _____ ⑧ 끊어 앓히는 방법
- _____ ⑨ 복도로 내 보내는 방법
- _____ ⑩ 엮드려 뺨혀 시키는 방법
- _____ ① 손들고 서게하는 방법
- _____ ② 눈감고 반성하게 하는 방법
- _____ ③ 벌로 청소를 시키는 방법
- _____ ④ 기타 _____.

8. 체벌은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체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봅니까?

- _____ ① 많이 달라진다고 본다.
- _____ ② 조금 달라진다고 본다.
- _____ ③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9. 체벌과정에서 선생님의 감정개입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_____ ① 많이 개입된다고 본다.
- _____ ② 가끔 개입된다고 본다.

_____ ③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고 본다.

_____ ④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고 본다.

10. 체벌은 일반적으로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_____ ① 먼저 체벌하고 뒤에 설득한다.

_____ ② 먼저 잘못을 인식시키고 뒤에 체벌한다.

_____ ③ 체벌하고 스스로 반성시킨다.

_____ ④ 체벌로 끝낸다.

11. 체벌은 그 관점을 어디에 둔다고 보십니까?

_____ ① 동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_____ ②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12. 체벌은 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_____ ① 즉시 한다.

_____ ② 기회를 보아서 한다.

_____ ③ 나중에 미루었다가 한다.

13. 아동의 체벌의 강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_____ ① 매우 강하게 해야 한다.

_____ ② 강하게 해야 한다.

_____ ③ 약하게 해야 한다.

14. 체벌은 어느 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학년초 _____ ② 학년중간 _____ ③ 학년말

15. 체벌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교사의 권위 때문에 _____ ② 교사의 지나친 열의 때문에

_____ ③ 아동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_____ ④ 아동의 학습부진 때문에

16. 체벌이 가장 불만이었던 때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_____ ① 교육적인 체벌이 아니기 때문에

_____ ② 감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_____ ③ 방법이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_____ ④ 체벌이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_____ ⑤ 편애하는 체벌이었기 때문에

17. 체벌에 항의를 하였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학부모의 무지 때문에

_____ ② 학부모의 극성 때문에

_____ ③ 교사와의 감정 때문에

_____ ④ 지나친 체벌 때문에

_____ ⑤ 다른 사람의 충동 때문에

_____ ⑥ 우리 아이만 체벌당하는 것 같아서

_____ ⑦ 기타 _____.

18. 체벌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_____ ① 상호 사과해야 한다.

_____ ② 교사가 사과해야 한다.

_____ ③ 학교장에게 항의해야 한다.

_____ ④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_____ ⑤ 학부모가 사과해야 한다.

_____ ⑥ 기타 제 삼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19. 체벌문제로 학교에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대단히 많다. _____ ② 가끔 있다.

_____ ③ 거의 없다. _____ ④ 전혀 없다.

_____ ⑤ 모르겠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ew-point of Physical Punishment Among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g-Sung University

1)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all of them were positive about the need of physical punishment. However no one agreed with severe physical punishment, but still light punishment could be utilized at school.

2) Parents and students appealed arbitray punishment. Thus the result could be arguing pin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nd teachers and parents. Thus teacher should clear the guidelne of punishment, but shouldn't execute physical punishment with temper.

3) In the method of physical punishment, regardless of teachers' career length, heating palms with ruler or stick was favored. However heating palms may result in physical damage of students. Thus there should be thought out way not to harm students' body.

4) With the view-point of physical punishment. generally motive was considered significantly, but parents and students also considered "Effect is more important than cause." This practically proves that still there remains such social tendency, emphasizing effect rather than cause and examination-result rather than study. Thus teachers should try to disclose cause, through analyzing overall behaviors which caused punishment.

5) For Dagee of Physical Punishment.

Parents and students insist that it should done lightly. Thus physical punishment in the school should be executed under strict guideline and still it shouldn't be exceed educational limit.